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9
----------	-----

제출년월일 : 2016. 2. 4 .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1. 제안이유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학금의 종류 삭제(제2조)
- 나. 장학금의 지급대상 구체화(제3조)
- 다. 상위 법령 및 조례에 맞게 용어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로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재학생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에게는 지도자 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유공자는"을 "유공자 장학생은"으로, "지도자중"을 "지도자로서"로, "공사상을 입은 자의"를 "공·사상을 입은 사람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뛰어난 자"를 "뛰어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비 보조를 받는 지도자의 자녀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강남구협의회장과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구청장"을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새마을지도자"를 "지도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새마을지도자"를 "지도자"로, "상식"을 "상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 수의"를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을 "떨어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하여"로 한다.

제10조 중 "되어야 하며,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를 "되어야"로 한다.

제11조 중 "정규예산에 계산한다"를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 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p>	<p><삭 제></p>
<p>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 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 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p>	<p>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로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재학생인 다음 각</p>

1. 유공자는 현직 부부지도자 또는 전·현직 지도자중 새마을사업 시행 중 공사상을 입은 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에게는 지도자 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1. 유공자 장학생은 -----
----- 지도자로서 --
----- 공·사상을
입은 사람의 --
2. -----

----- 해
당하는 사람
3. -----

----- 뛰어
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비 보조를 받는 지도자의 자녀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 지도자 강남구 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강남구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정)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가급적 중·고등학생을 각각 50퍼센트 이내로 안배하고, 중학교는 학교 간 평준화가 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중점 배정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

다 새마을지도자강남구협의회장과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정) ① -----
-----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조(장학생의 정원) -----
지도자 -----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

로 선발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식하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5. (생략)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

----- 사람에게는 -----

-----.

1. ----- 지도자-----

----- 상실-----

<삭 제>

3. -----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 떨어진 -----

4. 5. (현행과 같음)

② -----

----- 통보하여 -----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

되어야 -----
-----.

제11조(장학기금 확보) -----

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 예산에 계산한다.

-----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항에 대하여 정비 권고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항에 대한 정비 권고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 함으로써 별도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자치행정과 행정6급 양한성(3423-5212)